

## 2024년도 국토교통부 항공8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5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채용직위(직류)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임용예정일
관제	항공서기 (8급)	항공(관제)	15명	임용 후 채용시험 등을 기준으로 부서배치	'24년도 하반기

※ 임용 후 채용시험 성적 등을 기준으로 부서배치 예정

(대상 :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관제	항공(관제)	항공서기	○ 비행장, 항공로 등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 4 응시 자격

####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7.13.) 기준]

채용분야		응시자격요건
관제	자격증	<p>☐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li> <li>2. 「항공안전법」에 따른 관제분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 보유자</li> <li>3. 항공신체검사증명 1종 또는 3종에 해당하는 자</li> </ol> <p>※ 항공안전법 및 국제기구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 자격기준에 따라 1~3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p>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모두를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등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4.7.13.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기타 응시요건

- 자격증(면허증), 증명서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 \* 국내법령에 의하여 인정받은 자격 및 증명에 한함
- 원서접수일 기준 응시자격요건상 자격증, 증명서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최종시험 예정일(24.7.13)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응시 가능함
  - \* 이 경우 면접시험 당일 취득한 자격증, 증명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다.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원서접수 마감일(2024.4.19.) 기준]

구분	가점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선발예정인원 10명 이상에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선발예정인원 4명 이상에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가산점은 중복 적용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과 한국사능력검정 가점은 각각 적용가능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한국사능력검정 3급이상 소지자	1급 : 과목별 만점의 5% 2급 : 과목별 만점의 4% 3급 : 과목별 만점의 3%	

## [가산점 고려사항]

### ○ 기본사항

- 가산점은 필기시험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가산점은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까지 접수처에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반드시 응시원서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으나, 가산점을 받을 수 없음
- 응시원서 접수 이후에 가점 취득이 예상될 경우 응시원서 해당란에 해당 내용 작성  
\* 예시 : 한국사능력검정 1급 취득 예정('24.5.1)

### ○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급 : 5%, 2급 : 4%, 3급 :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우대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가산점 적용 대상자 여부 확인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지방보훈청(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4)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규정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 취업지원대상자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 5 시험 방법

### 가. 필기시험

- 필기시험은 3과목(공통 2과목 : 항공법규, 영어 / 전공 1과목)으로 실시
- 항공법규(20문제, 객관식 사지선다)
  - － 항공관련 법령과 규정 중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이상 4개 법은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및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제외) 등 중점 출제
- 영어(80문제, 객관식 사지선다)
  - － 문법, 듣기, 독해 및 어휘 유형으로 출제
- \* 청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2, 3급 이상)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을 듣기포함 성적으로 환산하여 그 점수를 인정(원서접수 시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전공과목(20문제, 객관식 사지선다)

채용직위(직류)	출제과목	범위
관제	항공교통관제	항공교통 일반사항, 항공로 관제절차, 접근 관제절차, 공항교통 관제, 레이더접근 관제, 항공교통관제사의 인적요인 등 중점 출제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함(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함)

### 나.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채용예정 직렬(직류)별 응시자격 적합여부 확인

## 다.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⑤ 직무 전문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6 시험 일정

채용 공고	원서 접수	필기시험 장소공고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자공고	서류전형 합격자공고	면접 시험	최종 합격자공고
'24.4.9(화) ~4.19(금)	'24.4.16(화) ~4.19(금)	'24.5.14 (화)	'24.6.8 (토)	'24.6.26 (수)	'24.7.4 (목)	'24.7.13 (토)	'24.7.25 (목)

- 공고 및 발표는 국토교통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필기시험 및 면접 시험의 세부 일정·장소는 위 일정에 따라 공지 예정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4. 4. 16.(화) ~ 4. 19.(금) 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22382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6층 서울 지방항공청 인사담당자 앞 (항공직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 032-740-2121
  -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되, 응시원서는 붙임의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



으로 작성하여야 함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하며,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 '우편 봉투(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1호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별지서식 제4호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격증(증명서) 사본 각 1부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 증명서, 항공신체검사증명 1종 또는 3종 증명서)	○ 별도제출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 별도제출
	가산점 대상자 제출 서류 1부	○ 별도제출
	병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남성에 한함)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	○ 별도제출
	청각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별도제출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8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044-201-3165)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할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붙임 2

##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b>관제</b>	항공(관제)	항공서기	15명	채용시험 성적 등을 기준으로 결정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제주지방항공청)

주요 업무	○ 비행장, 항공로 등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등
-------	--------------------------------------

필요 역량	○ (공통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

필요 지식	○ 항공법규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안전 관련 전문지식
-------	---

응시 자격 요건	자격증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 항공신체검사증명 1종 또는 3종에 해당하는 자
----------------	-----	---

가산점	구분	가점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선발예정인원 10명 이상에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사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선발예정 인원 4명 이상에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가산점은 중복 적용하지 않음
	한국사능력검정	과목별 만점의 5%, 4%, 3%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 과 한국사능력검정 가점은 각각 적용 가능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 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격증(증명서) 사본 각 1부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 증명서, 항공 신체검사증명 1종 또는 3종 증명서)	○ 별도제출
4. 가산점 대상자 제출 서류 1부	○ 별도제출(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한국사능력검정 등)
5. 병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남성에 한함)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	○ 별도제출
6. 청각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별도제출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자필 서명 필수
8.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4호)	○ 자필 서명 필수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 단면인쇄하여 제출

<별지서식 제1호>

# 응시원서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본인은 국토교통부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4월 일

응시원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항공서기(관제)					사 진				
※응시번호					성 명	(한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소	(우 )													
전자우편					복수국적 해당여부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행정용 A4 전자수입인지 가능)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항공8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항공서기(관제)					사 진			
※응시번호					성 명	(한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한자)							
주민등록 번호					-								
2024년 4월 일													
접수기관장 : 서울지방항공청장 ㉠													

## 주의 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분실시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시험본부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성명 : 한글 및 한자 성명 기재
  - 응시직급(응시분야) : 항공서기(관제) \* 수정금지
  -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곳)을 정확히 기재
    - \* 응시표는 응시원서에 적힌 주소로 송부할 예정(등기 송부)
  - 주민등록번호 : XXXXXX-XXXXXX 형태로 기재
  - 전자우편/휴대전화번호 : 본인이 직접 수신 및 통화할 수 있는 주소 및 번호 기재
  - 복수국적 : 응시원서 작성일 기준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흑백사진 불가)
  - 정부수입인지
    - 우체국에서 5천원 상당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 전자수입인지로 구입하여 별도 붙임도 가능(A4 크기의 행정용 전자수입인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접수기관장 : 응시분야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
    - 서울지방항공청장 \* 수정금지
- ※ 접선 하단 응시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하여 제출

\* 금번 채용은 채용요건인 자격증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으로 진행하므로,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등은 제출 불필요(금지)

<별지서식 제2호>

# 이 력 서

##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직급 및 분야	항공서기(관제)	성명	
----------	----------	-----------	----------	----	--

## 2. 응시자격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증명사항	증명사항	등급(종)	유효기간(예정일)
	항공영어구술능력		
	항공신체검사증명		

## 3. 가산점

※ 해당 없을시 삭제

한국사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시행기관
취업지원등	구분	번호	관계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4월 일

성 명 : (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년 4월 일

성명 : (서명)

인사혁신처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국토교통부는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b>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b>	공무원 채용 관리	<b>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b>	<b>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b>
<b>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b>	공무원 채용 관리	<b>학위,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b> 에 필요한 사항	<b>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b>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는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년 4월 일

성명 : (서명)

국토교통부장관 귀하